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88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6.
3. 회부연월일 : 2025.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 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 ③ (생략)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고 국방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 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현행법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군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1)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표 의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군인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과 공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군인복지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중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음.

[국방위 소관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제출 및 공표 입법례]

구 분	관련규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⑥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u>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u> 다만, <u>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u>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u>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u> 다만, <u>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u>

이들 법률들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의 공표로 인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시에는 단서를 신설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²⁾

[수정의견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u>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u>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u>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표 절차를 부령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위임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2) 추가적으로, 공표와 관련하여 국방부령으로 추가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선례와 같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